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

- 금융위는 2010년 7월 23일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행함.
 -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,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, 보험경영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며 10월 7일~27일까지의 입법예고 후,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24일에 시행될 계획임.
-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을 위해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을 강화하기로 함.
 -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경우 최초 등록 시, 그리고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.
 -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하고 모집·광고 시 ‘보험대리점’이란 문구를 명시하도록 규정함.
-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판매 권유 시 설명의무 이행, 적합성 원칙 적용, 허위·과장 광고 규제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됨.
 - 판매 권유시 계약 관련 주요사항,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, 해약환급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, 계약체결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주요 단계별로도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함.
 - 변액보험의 경우 월소득 및 월소득중 보험료 비중,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, 유사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함.
 - 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의 범위를 확대 추가하고 모집자격이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를 금지함.
- 보험경영 규제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절차 및 부수업무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.
 -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절차를 개선함.
 -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 7일내에 부수업무 내용 및 개시일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함.

(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, 금융위 등, 10/6)